

의월중앙 제 11대 총여학생회 <학술문화부>

1995. 4.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자료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 일반상담 529-4271~2
- 위기상담 573-1888
- ✓ ● 사무전화 576-7128
- FAX 576-7127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 일반상담 529-4271~2
- 위기상담 573-1888
- 사무전화 576-7128
- F A X 576-7127

대안없는 아이들 폭행



소림출판사
호남출판사
서울출판사

02-1751-852 서울출판사
02-1751-853 서울출판사
02-1751-854 서울출판사
02-1751-855 서울출판사

I.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차 례

I. 성폭력의 범위

I.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

1. 성폭력의 범위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3.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

II. 성폭력의 발생 실태 4

1. 25만명의 피해자
2. 숨은 피해자들
3. 성폭력은 여성 스트레스 1위

III.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6

1.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
2. 잘못된 성규범의 이해
3. 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IV.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응 9

1. 가족 및 주변인의 반응
2. 의료적 도움의 문제
3. 경·검찰에서의 문제
4. 재판에서의 문제

V. 바람직한 대처방안 13

1. 피해자를 돕는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
2. 법적 처리과정의 개선
3.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과 성불평등의 해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I.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은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

성폭력의 한 형태인 강간은 분명히 범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간이 일어나면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부끄러워 하며, 가해자에 못지 않은 사회적 비난이 피해자에게 쏟아집니다.

강도나 살인의 피해자는 당연히 동정을 받지만 강간 피해자는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됩니다. 강도나 살인의 피해자는 저항을 안하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강간피해자가 저항을 제대로 못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강도나 살인범은 마땅히 처벌을 받지만 강간범은 피해여성의 신분이나 행실에 따라 오히려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간은 정당화 됩니다. 『남자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여자 행실이 오죽했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까』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부주의, 유혹, 무저항 ?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합리화하는 잘못된 통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입니다. ① 피해자가 부주의 했다. (밤 늦게 혼자 다니거나 낯선 남자와 어울리는 등의 행동) ②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등의 행동) ③ 피해자가 저항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몸에 저항하다 생긴 상처가 없거나 주변인에게 소리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반면 가해자는 「강간은 본능적인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통념에 의해 죄가 가벼워집니다. 즉 현재의 잘못된 통념으로 미루어보면 강간이란 「피해자의 잘못이나 유혹으로 자극된 성욕을, 남자이기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충동적인 범죄」가 됩니다. 그리하여 강간의 책임은 「성욕의 노예인 불쌍한 남자」로부터 「부주의하고 행실 나쁜 피해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3.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연구들을 보면 강간의 동기가 성충동인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강간범죄가 계획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 끝에 당하는 강간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찔 수 없다」는 통념과는 달리 공격자로서 가해자는 폭행이나 흉기 사용 혹은 언어나 신체적 위협으로 갑자기 곤경에 처하게 된 여성을 충분히 강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은 실제 상황이나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기존의 성차별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인 인식입니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항상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규범을 부과하고,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규범은 강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만듭니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성충동 때문에 강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성폭력의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여성들의 행동범위를 제약하고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성폭력은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

이제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건전한 성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성문화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불평등의 정도들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가야 합니다.

II. 성폭력의 발생 실태

1. 25만명의 피해자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식통계에 나타난 수치만 봐도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이제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988년 1년 동안 신고된 강간이 5000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그 증가율 또한 모든 강력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공식통계의 수치는 실제 발생한 강간 중에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포함한 것입니다. 1989년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이 신고율로 실제 강간 발생건수를 추산해 보면 1년에 25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25만 건의 강간이 행해지며, 이중에 24만 5천 건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강간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숨은 피해자들

강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추행이나 성적 희롱 등 다른 성폭력도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989년의 조사에 의하면 2290명의 응답 여성 가운데 76.4%가 가벼운 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심한 추행은 23.7%, 성적 희롱은 48.6%, 성기노출은 74.5%, 강간 미수는 14.1%, 강간은 7.7%, 어린이 성추행은

6.5%의 여성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한 여성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가지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최하 4세에서 최고 64세까지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여성 중에 성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3. 성폭력은 여성 스트레스의 1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들은 실제로 성폭력 때문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1990년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와 같이 성폭력은 이제 한국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의 첫번째 원인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일상적 행동까지 제약받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두려워 여자끼리는 여행도 못하고, 혼자 집에 있을때 두려움을 느끼고, 밤 늦게 극장이나 공원에도 제대로 못갑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모두 부당한 피해이며 이것 자체가 성폭력입니다.

III.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성폭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1.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

강간 피해자의 경험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그 상황을 부인하고 싶은 거부감, 무력함, 나약함... 자존심이 상해 미칠 지경이었다.』

『죽고 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었다... 그건 인간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었다. 당시 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순간 생각나는 게 돼지나 통닭을 바베큐하는 듯한 모욕감...』

강간 피해자의 체험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약물

중독이 되거나 자해행동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피해 후 2년이 넘도록 성기의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신체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2. 잘못된 성규범으로 인한 순결의 문제

우리 나라에서는 강간의 정신적 피해가 여기서만 그치는 않습니다. 강간을 순결상실과 동일시 하는 풍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몸의 흔적, 처녀막은 그렇지가 없다는 생각에 ...』

『이젠 나한테 흠이 생겼다. 난 다 깨져버린 것 같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순결하다고 해도 육체가 짓밟힌 건 사실이니까.』

『윤락녀로 빠지는 여자가 이해가 갔다. 자포자기로 던져버리고 싶고...』

『이유없이 중매를 거절하게 되고 결혼에 대한 꿈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아, 여자는 이런 일을 당하면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결혼할 자격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불필요한 고통들은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성규범, 그리고 강간당한 것을 「성관계한 것」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간은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폭력입니다.

3.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

정신적 피해 못지 않게 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큼니다. 직장상실, 결혼기회 차단, 인간관계 손상, 행동장애, 임신, 성병, 신체적 상해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피해의 양태는 다양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강간피해자의 12%가 임신, 10%가 신체적 상해, 2%가 성병감염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50.4%가 인간관계의 파괴나 훼손 등 사회적 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흔히 강간이 아닌 강간미수나 추행, 성적 희롱 등은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한 추행의 피해자 중 8.2%가 불면, 우울증을 호소했으며 가벼운 추행의 경우도 45.5%가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며 그 잠재적 가능성만으로도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므로 전 여성들에게 커다란 억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IV.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응

성폭력의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는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겪기 쉽습니다.

1. 가족 및 주변인의 반응

앞에서 보았듯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고 혼자서 그 상처를 극복하려 하거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서 위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강간을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범죄」로 만든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어디에서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가정파괴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도움을 주어야 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편 뿐 아니라 동성끼리인 어머니, 언니, 친구들마저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언니에게 말했다가, 『그런 남자를 따라간 네가 미친년이다.』하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2. 의료적 도움의 문제

피해자는 심리적 도움 뿐 아니라 몸의 상처나 임신 혹은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치심으로 피해를 숨기다 보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문의를 만나는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 커녕 또 다른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강간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드나들게 되자 의사나 간호사가 아예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3. 경·검찰에서의 문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우리 사회의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보다 좌절시키는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의 진술과정에서부터 이미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낮은 기소율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나라의 10년 평균 강간기소율이 39.2%에 불과합니다.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검사들 역시 기소해야 할 사건들을 불기소처분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여 법의 통제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땅히 강간으로 보아야 할 사건을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이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강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재판에서의 문제

검찰에서의 낮은 기소율을 통과하여 법원에 접수되는 강간사건 중에서도 2/3정도는 무죄가 되거나 비실형의 판결에 따라 교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강간 중 2.2%

만이 신고되고 그 중 39.2%만이 재판과정에 들어가며 그 중 약 1/3만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재판의 문제로는 우선 실형 선고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며 범죄 사실과 무관한 성경험이나 평소 생활 습관, 직업 등을 신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당하는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간 재판 과정에 대한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재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몸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피해자 : 예.

변호인 :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질 내에 들어간 것이 틀림 없나?

피해자 : 예, 뭐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이 성교하면서 사정한 사실이 있나?

피해자 : 뭐가 들어오는 것 같았고 무척 아파서 그런 것을 했는지 느낌으로 모릅니다.

변호인 : 그런 행위, 그러니까 느낌이 시작해서 그 느낌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피해자 : 3분에서 5분쯤입니다.

변호인 : 긴 시간인데?

피해자 : 제 생각은 그쯤됩니다.

변호인 : 다른 느낌은 없었나?

피해자 : 아프기만 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강간 재판에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배려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성추동을 못 이겨 남에게 해를 입힌 남자」보다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성」을 더 비난하는 성차별적 규범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잘못된 통념의 결과

이렇게 강간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고 왜곡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통념의 수용은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신고된 후에도 효과적인 제재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강간범이 강간을 하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피해자에게 또 만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같은 성폭력 대처방식으로는 강간은 제대로 억제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통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도 가볍게 취급되어 여성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계속 침해당하는 현 상태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V. 바람직한 대처방안

1. 피해자를 돕는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러 방면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강간같이 광범위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성폭력은 심리적·의료적·법적·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피해 직후의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집, 기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보호해 주는 일이 요구되며, 성폭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 작업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긴급한 의료적·심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신고를 원할 경우 증거보전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의 수사, 재판과정을 함께 하며 피해자를 옹호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될 사회적·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위기 상태에 있으므로 정신과 치료나 위기상담이 요구되며, 장기적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 6개월 이상 상담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토로할 마땅한 대상이 없으며 토로하고 도움을 구한다 해도 잘못된 통념들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상담기관이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면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강간의 증가를 막는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2. 법적 처리과정의 개선

강간 규정의 문제

현재 우리의 법은 급증하는 성폭력을 통제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법조문은 강간이 성립하려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저항했다는 것과 폭행·협박받은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강간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식한 결과가 아닐 뿐더러 일반 폭행이나 강도사건과 달리 피해자에게 반항할 의무마저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부녀로만 규정함으로써 동성 강간의 남성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강간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친고죄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

성폭력이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래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도였으나 그보다는 성폭력이 법적 통제권 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9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반 이상이 친고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의 보호는 비공개 재판이나 재판 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법절차의 문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율의 증대와 형량의 조정, 재판시의 피해자 보호가 요구됩니다. 법조인들도 성차별 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불신하고 성폭력을 가벼운 사건으로 취급하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건들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사법처리상의 문제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확산되어서 법개정과 재판 관행의 변화를 앞당기는 것이 현재의 과제입니다.

3.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과 성불평등의 해소

성폭력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풍조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남녀불평등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랍니다.

여성의 지위와 여성다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은 여자가 강간의 피해자가 되기 쉽게 합니다. 군대나 감옥에서도 완력과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남자가 열등한 위치에 있는 남자를 강간할 뿐 그 반대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들을 유순하고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하게 키우는 것도 여자들을 피해자가 되기 쉽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유순

하고 순종적인 여자일수록, 즉 「여성다운 여성」일수록 성폭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곡된 성문화

한편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는 남녀 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성행위들을 자극적으로 조장하고 근본적으로는 남녀 불평등 관계를 더 뿌리깊게 하고 있습니다.

성을 평등한 주체로서의 남녀의 만남으로 보지 못하고, 남성만이 성의 주체이고 여성은 성의 대상으로 여기는 성관념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하고 성행위에서는 의례적인 거부를 해야 하며 최소한 수동적이기라도 해야 정숙한 여성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자에게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므로 실제로 애인이나 부부 사이의 일반적 성관계마저 강간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성문화 자체가 이미 강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성문화가 개선되어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교육의 필요성

새로운 성문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주체로서 인간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성행위만이 진정한 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홍보와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성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남녀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폭력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서구에는 지금까지 정리한 성폭력 대책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복지단체, 후원회원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강간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 혹은 독일의 <여성의 집(Frauhaus)>과 같은 기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 사회적 홍보활동, 법개정 작업, 교육활동 등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며 그 결과를 연구, 출판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성과는 많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과 성폭력 관련 법안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때입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발행일 1991년 4월 1일
발행인 최 영 역
발행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주 소 서울 서초 우체국
사서함 45호
전 화 ☎(02)576-7128
인 쇄 문지희

* 이 글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김선영(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대 여성학 석사논문)

박선미(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대 여성학 석사논문)

이명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대 여성학 석사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정 리 : 김 선 영)

적인 거꾸를 해야 하며 최소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므로 실제로 애인이든 부부 사이의 일관적 성관계마저 강간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성문화 자체가 이미 강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성문화가 개선되어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교육의 필요성

새로운 성문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을 통해 이루어진 성행위만이 진정한 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정보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성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발행일	1991년 4월 1일
발행인	최 영 애
발행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주 소	서울 서초 우체국 사서함 45호
전 화	☎(02)576-7128
인 쇄	큰기획

